

주요심결사례

2003. 2. 3.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전국기숙학원협의회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2광고1708)	<p>전국기숙학원협의회는 2002. 2월중 중앙일보 외 2개 일간지에 합숙형태의 학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편법·불법 기숙학원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라는 표제하에 “기숙학원은 철저한 학생관리와 높은 성적향상으로 학부모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한 불법·편법 기숙학원이 전국(부산, 대구, 강원 등)에 걸쳐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학생, 학부모님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식인가 된 합법적인 기숙학원은 아래 14개 학원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하고 동 표현 아래에 자신의 회원인 14개 학원사업자의 명칭을 가나다순으로 기재하면서 광고말미에 “주의 : 상기학원 외는 모두 편법·변칙 운영되고 있사오니 학기도중 폐원되어 수업중단으로 귀중한 재수생활을 실패하게되는 경우가 없도록 학부모님께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현, 자신의 회원 이외의 학원은 모두 편법·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숙학원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의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3. 2. 6.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한국까르푸(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 전사3211)	<p>한국까르푸(주)는 2002. 11. 22.부터 12. 1.까지 10일간 ‘김장준비 대잔치’ 행사를 실시하면서 전단지에 단순히 “배추 1포기 ₩330”이라고 광고하여 대전 둔산점과 문화점에서는 2002. 11. 22. 배추판매행사 첫날, 처음에는 배추를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원하는 수량만큼 판매하다가 갑자기 고객의 수가 늘어나자 그 이후부터 한정판매를 실</p>	



주요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시하였는 바, 대전 둔산점에서는 구매고객 1인당 배추 9포기로 판매수량을 한정하였으며, 문화점에서는 1인당 배추 10포기, 5포기로 각각 제한하는 등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정상판매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2호 위반	

2003. 2. 1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엘지텔레콤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2002경촉1244)	(주)엘지텔레콤 구미지점장은 2002. 7월 중순경 자기의 계열회사인 엘지필립스엘시디(주)에 설비를 납품하는 31개 협력업체에 대해 019 PCS 판매목표량을 통보하면서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엘지필립스엘시디(주)로부터의 하청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하였고, 2002. 7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개월간 엘지필립스엘시디(주)의 협력업체 직원 총 3,673명에게 6,499대의 019 PCS를 판매하는 등 자기의 계열회사에 설비·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 과징금 납부 : 6억 4천만원

2003. 2.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영산메디피아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1561)	(주)영산메디피아는 2001. 2월 사용설명서를 통하여 건강마트를 광고하면서 원적외선 치료효과로 “갱년기 장애, 수족냉증, 냉대하, 근육통, 좌골신경통, 비만, 만성변비, 상습변비”를 읊어온 치료효과로 “만성변비증, 급성관절염, 항류마치스 작용, 콜레스테롤 억제작용” 등으로 표현하여 광고하였는데, 동 표현에 대하여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의 원적외선 방사 시험성적서, 자기제품으로 각종 질병을 치료한 체험자들의 체험사례 등을 제출하면서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개년기 장애, 수족냉증, 냉대하 등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과학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없는 원적외선 및 음이온의 질병치료효과와 체험자의 주관적 체험사례는 객관적 입증자료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상기의 표현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2003. 2.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동남마루의 부당한 표시행위에 대한 건(2002광고3196)	(주)동남마루는 2002. 4월 일본 유사상표인 오까지마 노블(OKAJIMA NOBLE)이 표시된 포장상자를 도안한 후 온돌마루 제조업체인 (주)예건으로 하여금 이 도안이 된 포장상자 속에 국내산 온돌마루제품을 넣어 공급해주도록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동남마루는 2002년 11월까지 상기 제품을 공급받아 경기도 하남시, 구리시 등의 바닥재 소매점 등에 판매,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이 마치 일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 표시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5단 × 12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